

--주주님께

제 41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0 조에 의거 제 41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관 제 22 조 및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년 03 월 30 일(목요일) 오전 10 시 00 분
2. 장 소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117-12 본사 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41 기(2022.1.1 ~ 2022.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개정유유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2. (생략) 13. 전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14. 음식점 및 기타 서비스업 15. 전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사업목적추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제14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현행 표준정관 제17조 제1안 및 제2안 통합 - 정관에서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정관상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정관 제17조 제1안 및 제2안을 통합하고 기준일을 특정일로 제시하였음.
(제3항 하단에서 이동) (※ 주석 신설)	※ (주1)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 ※ (주2)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현행	개정	개정이유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자 기타 주주 또는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권리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권리자로 볼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 주식 신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신설>	※ (주3)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와 '배당을 받을 자'를 분리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배당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1항 하단으로 이동) 제54조(이익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한 제3항과는 달리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특정일로 규정할 수도 있음. ※ (주2) 배당기준일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며,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도 정할 수 있음. ※ (주3)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보다 앞선 날을 주식배당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하여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현행과 같음)	-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주석에 반영 - 기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1항 하단으로 위치 이동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결정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전의 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날로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 - 주식배당의 경우, 상법 제4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 종결시부터 그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 이전으로 정하여야 함을 설명하는 주석 신설 - 부칙 신설
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제 3 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3-1 호 의안 : 사내이사 윤준식 후보 선임의 건 (신규선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윤준식	1981.10.12	現 (주)태광 부사장 前 TK Fitting USA 총괄 - 미국 남가주대 기술경영 석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이사회	보통주 45,000주 보유	특수관계인

성 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윤준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2 호 의안 : 사외이사 맹진욱 후보 선임의 건 (재선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맹진욱	1976.01.07	現 (주)태광 사외이사 現 회계법인 공감 前 성도회계법인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맹진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 4 호 의안 : 상근감사선임의 건

4-1 호 의안 : 상근감사 정동진 후보 선임의 건 (재선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동진	1958.02.24	現 (주)태광 감사 現 최진회계사무소 前 국세청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정동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 5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0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및 모바일 주소

: 「 <http://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20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신분증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7.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안내

코로나 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한 실내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드립니다. COVID-19에 따른 정부 방침이 변할 수 있어 입장 방식도 추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상법 시행령 제 31 조제 4 항 4 호에 따른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 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www.tkbend.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03 월 일



주식회사 태광
대표이사 윤성덕 (직인생략)